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8. 19. 김용태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 2024. 8. 2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9.25.)

상정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가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4.11.2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최근 저출생 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과 학교 소멸 위기 상황에 대

응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가 협력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2023년부터 돌봄시설,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의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학교의 교육·돌봄, 지역의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조성·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대상 및 용도를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설치의 근거를 신설하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특례 규정,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따른 학생의 안전 확보,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 및 면책, 교부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천우정)

가. 학교복합시설 설치 대상 및 용도 확대

1) 법 적용대상 학교에 유치원과 대학 추가

현행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복합시설법”이라 함)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¹⁾,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고등공민학교, ③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④ 특수학교, ⑤ 각종학교가 이에 해당함.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²⁾에 따른 유치원과 「고등교육법」 제2조³⁾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⁴⁾를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포함하려는 것임.

1) 「학교복합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垜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4)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등에 근거한 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근거한 경찰대학 등이 이에 해당함.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유치원과 대학이 포함되어 있으나⁵⁾, 「학교복합시설법」 상 “학교”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유치원과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⁷⁾.

한편 교육부는 2023년 3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는바, 229개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 되도록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2023년~2027년) 매년 40개교씩 총 200개교에 학교복합시설을 공모 및 선정할 계획이며, 총 1조 8,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임⁸⁾.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안번호: 2202956)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가능 대상에 유치원, 대학, 폐교 등이 포함되게 되나, '24년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이미 해당 대상들이 포함되어 추진되고 있음.

[표] 유치원, 대학 및 폐교에 설치(예정)인 학교복합시설

구분	지역(광역시)	사업명	비고
폐교	부산	부산 감정초등학교	기설치
유치원	경북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설치 예정
폐교	부산	구)반여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폐교	경기	(가칭)모가분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폐교	강원	속초 복합교육체육센터 건립	
폐교	충북	(폐교) 황간중학교	
폐교	충남	홍성군 학교복합문화스포츠센터 건립	
폐교	경북	(구)하양초등학교 화성분교 복합체험센터 건립 사업	
대학	군산	지역연계 복합센터	
대학	창원	스포츠·문화콤플렉스 건립사업	
대학	서울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	
대학	경산	대구가톨릭대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자료: 교육부

6)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7) 현행법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해당 규정이 유치원과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어서 현재도 유치원 및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제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추진 중임.

유치원의 경우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최종 사업 대상 중 하나로 경북 김천시의 ‘울빛유치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이 선정되었고,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까지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을 확대하여,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거점화를 계획하고 있음.

교육부는 또한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여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 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임.

따라서 향후 유치원과 대학에서도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기대되는바, 유치원과 대학도 「학교복합시설법」상 “학교”에 포함시켜 교육경비를 보조받는 등 동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⁹⁾.

2) 폐교에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학교복합시설 용도 확대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¹⁰⁾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8)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2023. 3., 교육부

9)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대구교육청에서 “학교복합시설 적용 대상에 대학을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외 운영경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경우,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교육예산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에 투입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악화 우려되므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의 경우 삭제 요청”을 하였으나, 교육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학교”에 포함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의 교육경비를 보조 받을 수 있게 됨.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문화체육시설¹¹⁾, ②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¹²⁾, ③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¹³⁾,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¹⁴⁾을 말한다.

가. 교사대지(校舍地)·체육장 및 실습지

나.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다. 그 밖에 학습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1조의2(기타시설)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제1항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설치되는 강당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3.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및 특수학교의 실습지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5.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

6.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복합시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12) 「주차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

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다. 부설주차장: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1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14)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를 교사대지(校舍垞地)·체육장 및 실습지 등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로 한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고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¹⁵⁾에 따른 폐교를 말함)로 확대하였음.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폐교가 포함되어 있으나, 「학교복합시설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폐교에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¹⁶⁾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비를 보조받을 수 없는 등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폐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신도시, 구도심,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학교신설·폐교 등 학교 생애 주기를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며, 폐교 시설을 리모델링 및 증·개축하여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계획임.

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15)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16) 「학교복합시설법」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며, 폐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현행법상 학교복합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평생교육시설과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며, 시행령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자체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¹⁷⁾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로 열거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시행령과 유사한 취지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하였음¹⁸⁾.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사업과 늘봄학교¹⁹⁾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인공지능(AI),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

17)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8)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2조(학교복합시설의 범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른 건강생활지원센터

2.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그 밖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19)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임(늘봄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afterschool.kosac.re.kr/cms/content/view/242>)

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원할 예정임²⁰⁾.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맞춰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 및 학교 복합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²¹⁾, 현행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장소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을 삭제하는 대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행에 필요한 절차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임²²⁾.

20)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3p, 2023, 교육부

2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2)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것으로, 유치원 및 대학의 경우 별도의 사업시행 절차와 관련한 특례규정은 없음.

나. 학교의 “감독기관장등” 용어 신설 및 용어 정리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법」의 적용대상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초·중·고등학교) 외 유치원과 대학교로 확대하면서 각 학교별로 일정한 관계자를 “감독기관장등”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²³⁾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을 말하며, 국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감이 이에 해당함.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²⁴⁾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을 말하며,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장관, 공립·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감이 이에 해당함.

대학교의 경우에는 ①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대학 총장, ②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③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이에 해당함.

<학교별 “감독기관장등”>

	국립	공립	사립	비고
유치원	교육부장관	교육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총장	지자체장	이사장	

23) 「유아교육법」 제18조(지도·감독) ①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24)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한 개정안은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용어정리를 하고자 하는바, “감독기관장등”의 역할로는 ①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지정(안 제2조제3호), ② “감독기관장등”이 동의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안 제5조제1항제1호), ③ “감독기관장등”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학교복합시설 설치(안 제5조제1항제2호), ④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안 제5조제2항), ⑤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건축 시행 주체 결정(안 제5조제3항), ⑥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소유권 결정(안 제5조제4항), ⑦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 결정(안 제6조제1항), ⑧ 지자체장의 “감독기관장등”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안 제10조) 등이 있음.

이와 같이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지정 및 설치, 건축 시행, 소유권 결정 및 운영·관리자 결정, 보조금 수령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관리 전반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를 규율하는 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장으로 규정한 자를 “감독기관장등”으

로 정의하였으나,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인 교육부장관을 “감독기관장등”으로 정의하지 않고, 학교의 설립 방식에 따라 총장, 지자체장, 이사장으로 하였음.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면서, 「초·중등교육법」상 감독기관의 장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하여 협의 등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대학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볼 만한 조직과 예산을 갖고 있으며, 단위시설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 권한이 총장(국립), 지자체장(공립), 이사장(사립)에게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하였음.

다음으로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공립 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이므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이 동일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이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인바, 공립 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의 지자체장과의 업무 협의 등을 생략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년)을 마련하였는바, 2023년부터 매년 40개교씩 학교복합시설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임.

또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업 및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동 시스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 학교복합시설 포털사이트(<https://www.edumac.kr/sc/index.do>)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며, 동 사이트에서는 ‘정책 소개’, ‘사업 현황’, ‘정보조회’ 및 ‘자료실’을 통하여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은 기존 학교복합시설 포털사이트 개편, 별도 시스템 구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²⁵⁾에 근거하여 구축·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보망을 활용한 기능개발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음.

한편,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복합시설은 부처협업 강화가 필요한 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및 가족센터(이상 여성가족부) 등 학교복합시설과 연계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도시재생사업(국토교통부) 추진 시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바, 이와 같은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할 경우 동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라. 손해배상 책임 및 적극행정시 면책조항 마련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의 협의 사항 명확화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은 제5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 문언에 명확히 기술하지 않고 있음.

현행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1항은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는데,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경우 운영·관리하는 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교육부 또한 이와 같이 동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으로 법 문언을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용어정리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임.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 “운영·관리하는 자”의 경우 모두 “학교복합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²⁶⁾, 동 개정

안으로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탁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 등 마련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손해배상 및 학교복합시설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이 없는바,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책임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인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로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填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은 사법(私法)상 손해배

26) 약칭이란 빈번하게 사용되는 문구 또는 단어를 줄여 대표할 수 있는 문구 또는 단어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약칭을 사용할 경우 입법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으나,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약칭을 사용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법제기준과 실제, 231p,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상과 행정상 손해배상으로 나누어짐. 사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민법」이,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이므로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됨²⁷⁾).

동 개정안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국가배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동 개정안으로 손해배상책임 근거 조항이 마련되더라도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것이며, 동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학교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운영관리자 등의 적극행정시 면책조항 마련

개정안은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이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것임.

27) 법제기준과 실제, 632p,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개정안과 같은 취지로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함)을 장려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⁸⁾.

또한 「행정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

28)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²⁹⁾.

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행정부), 「법원감사규칙」(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음³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방과후 학교 참여율 확대,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사교육비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사고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등으로 학교에서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개정안은 적극행정 시 면책관련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9)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①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 및 조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의 적극적 추진 및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징계 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법원감사규칙」 제26조(적극적 업무처리에 대한 면책)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61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60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정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주민개방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학교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소극적인 입장이므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로 학교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 찬성 입장임.

마. 학생의 안전 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³¹⁾.

현행 「학교복합시설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현행법 제8조제2항³²⁾에서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시설의 안

3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①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32) 「학교복합시설법」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³³⁾,

교육부에 따르면 화성동탄이음터, 시흥너나들이 등 많은 학교복합시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법」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위임하며, 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학교복합시설법」에서 규정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우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써 학생안전 문제³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복합시설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비하여 고정

3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4) 경기 △△초 : 학생과 주민 간 동선 분리가 전혀 되지 않아 학생안전 논란(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4p, 2023, 교육부)

형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부는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³⁵⁾를 적용하여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할 계획인바, 이와 연계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복합시설을 위한 별도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바.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의 설립

현재 「학교복합시설법」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³⁶⁾으로 한국교육개

35)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학습환경 침해 방지,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학생과 이용자 동선 분리하는 등 복합시설 블록을 독립적으로 설계

36) 학교복합시설법 시행령 제5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 수행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 관 명	
1. 한국개발연구원	15. 한국법제연구원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9. 한국환경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8. 산업연구원	22. 국토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원(KEDI)³⁷⁾이 지정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³⁸⁾.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등³⁹⁾ 교육과 관련한 연구·개발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설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운영·관리로 보여지며, 연구·개발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복합시설 기획·컨설팅 등 현장지원 업무, 연구·자료 개발, 공모지원·자문단·실무협의체 운영, 교육·연수 및 홍보,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⁰⁾.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4. 건축공간연구원
---	-------------

37)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에서 수행중임.

38)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학교복합시설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한국교육개발원 외에 비영리법인, 단체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39) 「**한국교육개발원 정관**」 **제4조(사업)** 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2. 교원, 교육재정,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개발
3. 원격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4. 글로벌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개발
5.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개발
6. 교육조사·통계에 관한 연구·개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연구 또는 사업에 관련된 조사, 교육·연수, 연구성과 확산, 공동연구, 수탁, 진단·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부대사업 또는 기타 개발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따라서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과 별도로 운영·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기관을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에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년)을 보면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임.

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

4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의안번호: 2202956) 참조

기관을 설치·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는 제도임⁴¹⁾).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⁴²⁾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는바⁴³⁾, 동 개정안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것으로 보임⁴⁴⁾.

이와 달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설치와 달리 아직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음.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2023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41)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 221p, 국회예산정책처

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그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과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 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건축연면적
		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43) 공립학교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에 지원하고 있음.

44)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2024년 9월 현재 총 80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지정되었음(교육부 보도자료, 「2024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 결과 발표」, '24.08.08). 2023년과 2024년도에 지정된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1조 5,698억원으로, 이 중 6,616억원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계획인바,

동 개정안은 이와 같은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과 동일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법 개정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문정복)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교육부장관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삭제하여 수정하여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체육시설로서’를 ‘체육·주차시설 등으로서’로 변경하는 등 자구수정이 있었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27.

제안자 : 교육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감독기관장등”의 역할은 지자체장의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것인데, 공립대학의 경우 “감독기관장등”이 지자체장이어서 지자체장과 “감독기관장등”이 동일하므로 “총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다목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내용 또는 절차에 관하여 「민법」이나 「국가배상법」과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제5항).

교육부장관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삭제함(안 제10조의2).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다목2)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총장”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단서 중 “자를”을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 “운영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0조의2의 제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를 “경비의”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으로 지원할”을 “지원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 <u>중등교육법</u> 」 제 <u>2조에 따른 학교</u> <u>를 말한다.</u>	제2조(정의) ----- ----- -----. 1. “학교”란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u> <u>학교를 말한다.</u> 가. 「 <u>유아교육</u> <u>법</u> 」 제2조제2 <u>호에 따른 유</u> <u>치원</u> 나. 「 <u>초·중등교</u> <u>육법</u> 」 제2조 <u>에 따른 학교</u> 다. 「 <u>고등교육</u> <u>법</u> 」 제2조에 <u>따른 학교 및</u> <u>이와 같은 수</u> <u>준 이상의 학</u> <u>교로서 다른</u> <u>법령에 따라</u> <u>설치된 학교</u>	제2조(정의) ----- ----- -----. 1. (개정안과 같음)
<신설>	2. “ <u>감독기관장등</u> ”	2. -----

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
법」 제18조제
1항에 따른 지
도·감독기관
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
육법」 제6조
에 따른 지도
·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
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
·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
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

-----.

가.·나. (개정안과
같음)

다. -----

1) (개정안과
같음)

	<u>학교: 총장</u>	
	<u>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u>	2) ----- ----- ----- -- <u>총장</u>
	<u>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u>	3) (개정안과 같음)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	3.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	3. (개정안과 같음)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		

<u>른 시설은 해당</u> <u>되지 아니한다.</u> <u>가. 「국토의 계</u> <u>획 및 이용에</u> <u>관한 법률」</u> <u>제2조제6호라</u> <u>목에 따른 공</u> <u>공·문화체육시</u> <u>설</u> <u>나. 「주차장법」</u> <u>제2조제1호에</u> <u>따른 주차장</u> <u>다. 「평생교육</u> <u>법」 제2조제1</u> <u>호에 따른 평</u> <u>생교육을 위하</u> <u>여 설치한 평</u> <u>생교육시설</u> <u>라. 그 밖에 대통</u> <u>령령으로 정하</u> <u>는 시설</u>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 조에 따라 학교복합 시설을 설치한 자가	<u>관장등이 협의하</u> <u>여 정하는 시설</u> <u>을 말한다. 다만,</u> <u>「교육환경 보호</u> <u>에 관한 법률」</u> <u>제9조에 따른 시</u> <u>설은 해당되지</u> <u>아니한다.</u>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 -----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 ----- -----
---	---	--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
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운영으로 인하여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
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

② _____
운영 · 관리하는 자
(이하 “운영관리자”
라 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자(이하 “운영관리
자”라 한다)를

② 운영 관리자

③ (개정안과 같음)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
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
이 제한 또는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
영·관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
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운영관리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
활동 및 학교운영
이 제한 또는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시설의 운
영·관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개정안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운
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고의 또는

<삭 제>

	<u>과실로 법령을 위</u> <u>반하여 타인에게</u> <u>손해를 입히거나</u> <u>하자로 인하여 타</u> <u>인에게 손해를 발</u> <u>생하게 하였을 때</u> <u>에는 「국가배상</u> <u>법」, 「민법」 등</u> <u>관계 법령에 따라</u> <u>손해를 배상하여야</u> <u>한다.</u>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⑤ (현행 제5항과 같 음)
<신 설>	제10조의2(지 방 교 육 재정교부금의 지 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 치목적 달성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 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 교 육 재 정 교	제10조의2(<u>경비의</u> 지 원) ----- ----- ----- ----- ----- ----- ----- ----- ----- ----- 지원할-----.

	<u>부금법」에 따른</u> <u>교부금으로 지원할</u> <u>수 있다.</u>	
--	---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중전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주차시설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하고,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지
도·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
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제5조제1항제1호 중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
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
다)”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같은 조 제2항·제3
항 및 제4항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각각 “감독기관장등”으로 하며, 같
은 조 제5항 중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등”을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복합시설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

는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를 “감독기관장등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문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 등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를 “연구·자문 등의”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감독기관의 장”을 “감독기관장등”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신 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신 설>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신 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신 설>	2. “감독기관장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나. 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6조

2.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
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학교시설에 설치하
는 시설로서 학생과 지역주민
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시설은 해당되
지 아니한다.

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의
장

다. 제1호다목에 따른 학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자

1) 국가가 설립·경영하거
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
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총장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공립학교: 총장

3) 학교법인이 설립·경영
하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

3. -----학교
또는 폐교(「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폐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 학생
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체육·주차시설 등으로서 지
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 목에 따른 공공·문화체육 시설	<삭 제>
나. 「주차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차장	<삭 제>
다. 「평생교육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위 하여 설치한 평생교육시설	<삭 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시설	<삭 제>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학교복합시설의 설치) ① ----- ----- ----- -----.
1.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 (이하 “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학교복합시설을 설치 하는 데 동의한 경우	1. 감독기관장등----- -----
2. 감독기관의 장이 학교복합시 설을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 한 경우	2. 감독기관장등-----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기	② -----감독기

른다.

⑥ (생 략)

<신 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학교복합시설은 제5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
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
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
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및 이
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
운영 현황 등을 제공하는 학교
복합시설지원시스템(이하 “지
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지
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
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복합시설의 운영·관리
원칙) ① -----

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한 자가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또는 지역주민의 주된 사용 공간, 이용 빈도 및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과정, 교직원의 업무 등 해당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

-----감독기관장등
이 협의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하 “운영
관리자”라 한다)를-----
-----.

② 운영관리자-----

-----.

③ 운영관리자-----

-----.

④ 운영관리자-----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학교복합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
인, 단체 또는 제9조에 따른 전
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생
략)

② 학교복합시설을 운영·관리
하는 자는 운영협의회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비
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운영관리자 및 학교복합시
설이 설치된 학교의 교직원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학생
안전관리 업무 등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제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
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생의 안전 확보) ① (현
행과 같음)

② 운영관리자-----

-----.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전문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사·분석, 연구·자문,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신 설>

③ 운영관리자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구역,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⑤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 ① -----

-----연구·자문 등의-----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감독기관의 장(교육부

설치·운영·관리를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지원

2.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관리 지원

3.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 교육감은 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기준,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교육경비 보조의 특례) --

-----감독기관장등-----

장관은 제외한다)에게 보조할 수 있다. <u><신 설></u>	----- -----. <u>제10조의2(경비의 지원)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u>
--	--